

## 근대 서구사상에서의 국가 이해

박 일 준 (감신대, 기독교통합학문연구소)

### 1. 들어가는 글

우리 시대에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우리 시대에 존재 형식의 경계이다. 시민권(citizenship)을 기반으로, ‘국민’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정치체제 특성상, 우리 각자를 하나의 ‘인간’으로 정초(定礎)하고 있는 가장 법적인 토대, 즉 ‘국민’을 구성하는 근원적 단위가 바로 ‘국가’이다. ‘국가’라는 정치 단위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국가라는 정치 단위 속에서 우리 각자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단 조건이 붙는다. 그 국가 장치의 소속된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이러한 ‘국가’ 이해는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개념은 특정 시대의 산물인가? 만일 특정시대의 산물이라면, 그 기원하는 시대로부터 우리 시대가 또 다른 역사적 맥락으로 진입했을 때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개념이 그 본래적인 맥락에서 맞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신학적 답변은 가능한가? 본고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의 실마리들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 2. 근대의 산물로서 국가 개념과 그 한계

우리 시대에 역사는 진보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단지 한반도에 국한된 느낌이 아니다. 일찍이 애를 해리스는 뉴턴적 사유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당대의 최신 물리학적 발견들을 자신의 철학적 사유 속에 정초한 화이트헤드의 시대 이후 오히려 현대철학자들의 사유양식은 18세기로 퇴행하고 있다고 일갈한 바 있다.<sup>1)</sup> 이는 ‘국가’를 주제로 쓰고 있는 본 글의 맥락이 처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미 현대물리학을 비롯한 많은 지식 분야들이 ‘개체-중심의 사유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고 경고한지가 한 세기가 넘어가는 요즘, 우리들의 국가 개념은 여전히 18세기 뉴턴적 사유방식, 즉 개체적이고 원자적인 존재 이해에 기반을 두고, 개인과 국가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구조를 ‘시공간’으로 바꿔야함을 가르쳐주었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시간과 공간은 서로 독립적인 매개항들이다.

뉴턴적 사유방식은 중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의 시간과 공간 구조에 근간한 세계인식 방식을 가리킨다. 중력을 발견함으로써, 이제 우주를 수학적 원리를 통해 설명하는 것을 가능케한 위대한 과학자였지만, 그는 또한 빛의 파동설을 부정한 입자론자이기도 하다. 당시 빛의 속성은 파동이라고 주장하던 호이겐스의 이론에 맞서 뉴턴은 빛은 입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증거로 그림자를 지적하였다. 만일 빛이 파동이라면, 빛의 진행 경로에 어떤 물체가 끼어들어도 그림자가 생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파동은 그 장애물을 우회해서 통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물리학에서 모든 입자는 동시에 파동이라는 입자/파동 이중성이 입증되었지만,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뉴턴은 입자론자였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

1) 애를 해리스(Errol E. Harris), 『파멸의 목시록: 과학적 패러다임과 일상의 사유양식』(*Apocalypse and Paradigm: Science of Everyday Thinking*), 이현휘 역 (부산: 산지니, 2009), 43.

그가 빛이 입자라는 사실을 주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한되지 않는다. 그가 우주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는 모든 것이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본질적으로 독립적이고 개체적이며, 사물들의 관계성은 그 개체적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유가 개인과 국가에 대한 이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개인과 국가의 본질은 그 자체로 규정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맺고 있는 관계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뉴턴의 입자적 사물이해는 자연법 개념의 변화도 동반한다. 중세에 자연법은 이성의 법칙이면서 동시에 신의 법칙이었다. 즉 자연법은 “물리적 세계와 인간 사회의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법칙”으로서, “이성이 명령한 도덕적 법칙과 사회의 법칙을 의미함과 동시에 천체의 운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의미”한다.<sup>2)</sup> 하지만 뉴턴의 자연법 개념은 더 이상 인간 사회의 도덕 법칙이나 사회 법칙과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뉴턴적 사유 패러다임 속에서 자연법이란 “물질적 입자의 운동을 결정하고, 천체의 기계적 운동을 통제하는 인과관계의 일반적 진술”<sup>3)</sup>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 속에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정초하는 당위의 영역은 자리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주창한 사유와 연장의 이분법은 이제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우리의 국가 개념은 이 연장선 상에서 확립되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신은 물질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분리된 순간,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 생존만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물질적 존재로 규정되었고, 정치와 법과 도덕은 이러한 이기적 본성의 발현이 가져올 파멸적 귀결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계약’의 형식으로 도입된다. 이러한 사회적 계약의 도입을 통하여 인간은 “그들 각자의 권력을 특정 영역에서 배타적 주권을 소유한 어떤 개인(이나 다른 집단)에게 적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들 본래의 자유를 포기하고,

---

2) 『위의 책』, 68.

3) 『위의 책』, 69.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정치공동체”<sup>4)</sup>의 설립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정치 공동체로서 국가는 “자결권과 독립성을 소유한 주권 국가인데, 이런 주권 국가는 다른 주권국가들과 자연상태에서 인간 사이에 성립했던 원초적 관계, 즉 전쟁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sup>5)</sup> 이것이 토마스 홉스의 철학 속에 승계된 뉴턴적 패러다임이었다.

뉴턴적 패러다임은 로크의 철학에도 그대로 이어져, 사회적 계약은 인간 개개인의 본래적으로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 즉 “각자가 타인의 소유권 주장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지켜야 하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sup>6)</sup>이다. 이는 곧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개념은 이 연장선 상에 있다.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삼권분립은 “피지배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을 확립”<sup>7)</sup>하기 위한 것이다. 요약하면 뉴턴적 사유 패러다임을 통해 승계된 ‘원자론적 개인주의’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쪽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도덕적 문제에서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본래 교회의 권력에 맞서 개개인의 양심의 독립성을 주창한 개신교 종교개혁 속에 본래적으로 담겨있는 사유 구조이기도 하다. 종교개혁을 통해 신앙은 개개인의 신념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종교와 도덕은 상대화되었으며, 종교와 과학은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유는 곧 근대에서 현대로 접어들던 시기,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 fallacy)의 형태로 등장하는데, 이는 곧 존재(is)에서 당위(ought)를 추론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세기 정치는 18세기적 사유를 그대로 반복하였다. 즉 20세기의 정치적 사유는 개인의 권리 개념 위에 스스로를 정초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상호의존성

---

4) 『위의 책』, 70.

5) 『위의 책』, 79.

6) 『위의 책』, 71.

7) 『위의 책』, 71.

개념은 부차적이거나 무시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으로 간주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변수조건으로 간주되고 말았다.

18세기의 뉴턴적 사유를 20세기 정치의 현장에서 반복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폐해는 곧 국가를 ‘개인’ 혹은 ‘개인의 권리’ 개념의 빛에서 이해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국가 주권의 독립성’으로서, ‘독립된 국민국가가 각자의 배타적 주권을 주장함으로써’<sup>8)</sup> 국제정치는 마치 국가라는 개별체가 서로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경쟁하고 투쟁하는 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가 세계무대에서 존재하는 국가들의 유일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가장 자연스런 정치구조라는 고정관념”<sup>9)</sup>에 의한 것이다.

주권 이론은 크게 ‘법률적(juristic) 주권’과 ‘윤리적(ethical) 주권’으로 구별되는데, 전자는 ‘정부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소유한 중심 법원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정부가 통치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주권을 행사할 때 국가의 공공 이익에 기여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하고, 피치자의 동의에 기초해서 정부의 권위를 확립해야 함을 주장한다.<sup>10)</sup> 본래 전자 즉 법률적 주권 개념은 가톨릭의 왕권신수설 전통으로부터 유래하여 신성로마제국의 후예들로 계승되었고, 윤리적 주권 개념은 종교개혁으로부터 유래하여 네덜란드와 영국의 전제 정치에 저항하는 이들을 통해 꽃을 피운 이론이다.

우선 법률적 주권 개념은 ‘계약 당사자가 독립적인 인간이고, 각자는 자신에게 고유한 이익을 추구할 것을 전제’<sup>11)</sup>하는 인권 모델을 ‘국가 단위’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근대 개인주의를 크게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라는 최고 권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분쟁을 해결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시 최후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사적 개인의 도전

---

8) 『위의 책』, 104.

9) 『위의 책』, 104.

10) 『위의 책』, 108.

11) 『위의 책』, 109.

을 물리치면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sup>12)</sup>을 소유한 기관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리적 주권 개념은 “권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은 피치자들 다수의 협력과 동의를 획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순조로운 통치가 가능”<sup>13)</sup>함을 강조한다. 즉 통치자의 정치권력은 언제나 피통치자의 공동체로부터 유래하며, 따라서 “그들에게 허용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결정”<sup>14)</sup>된다.

이 두 이론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주권 개념과 윤리적 주권 개념은 주권이 ‘상호 독립된 개별적 단위로 존재’함을 주장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각 개인은 “타인과 국가 권력의 횡포에 저항해서 자연권의 이름으로 양도할 수 없는 결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개념적 토대를 갖는다.<sup>15)</sup> 즉 16세기와 17세기에 등장한 법률적 주권 이론과 윤리적 주권 이론은 모두 ‘개인주의적 인간관과 고립주의적 주권국가관’<sup>16)</sup>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개념적 근거가 바로 뉴턴 패러다임의 산물인 것이다. 개인을 배타적 권리를 소유한 고립되고 독립적인 단위로 간주하는 인권 개념은 주권의 독립적 단위로서 국가를 주창하고, 그 주권의 영역에서 국가가 최고의 권위를 발휘한다는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 정치의 현장에서 기본 단위는 개인의 인권이고, 국제정치의 현장에서 기본 단위는 독립국가의 주권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근대 개인주의는 국제 정치 현장에서 국가-이기주의의 형태로 변형 발전된 셈이다. 이러한 개념적 토대 위에서 사실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혹은 국제연합은 어떤 절대적인 근거나 토대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국제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단위는 ‘주권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뉴턴적 사유 패러다임의 후손들인 주권 개념은 사실 오늘날 인류가

---

12) 『위의 책』, 112.

13) 『위의 책』, 112.

14) 『위의 책』, 113.

15) 『위의 책』, 109.

16) 『위의 책』, 113.

직면하고 있는 지구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환경 위기 등과 같은 영역들에서 전혀 해결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구적 문제는 ‘오직 지구적 차원의 처방만이’<sup>17)</sup>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어떤 개인도 사회의 규칙 및 규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떤 국가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른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으며, 자연이란 인간이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외부 세계의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경제 및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이자 양식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sup>18)</sup>

따라서 인간을 고립적으로 독립된 개체로 전제하고 ‘인권’을 배타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은 ‘지구적 책임성’(global responsibility) 개념을 담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근대적 인권 개념에 기초한 국가 개념을 통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처한 지구적 문제에 대한 대안적 국가 개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 3. 개인의 권리로서 인권 개념의 근원: 저항권

에롤 헤리스의 분석은 개인의 권리로서 인권 개념이 근대에 형성되고, 그 개인의 권리 개념이 국가라는 단위에 확대 적용되면서, 국가는 주변 이웃 및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주권을 갖는 개별 실체로 상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개념은 근대 뉴턴적 사유 패러다임이 입자적 혹은 독립적 실체로서 물질과 인간을 조망했고, 그리고 그러한 ‘개인’(individual)의 개념을 국가와 정치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정치의 현장에 적용하면서, 완전

---

17) 『위의 책』, 132.

18) 『위의 책』, 136.

히 단절되고 독립된 개체의 주권을 지닌 국가라는 소통불능의 단위가 창출되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한다.

해리스의 이러한 분석은 현실의 정치 상황을 볼 때 매우 공감이가는 비판이지만, 해리스의 이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근대의 개인’(modern individual) 개념이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담지하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 측면이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차차 희석되어 퇴보하게 된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개념의 추적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왜 ‘인권’을 개인 중심으로 애초에 정초하게 되었을까를 물으면서, 이제 개인의 자주적 독립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우주적 연대(cosmic solidarity)가 문제되는 시대에 그 근대의 개념이 담지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극복하고, 긍정적 측면들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를 진지하고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 시대의 인권 개념은 ‘저항권’ 개념으로부터 정초되었다. 예를 들어 ‘자유’라는 개념은 고대 로마의 자유인 개념으로부터 유래를 갖긴 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11세기 말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통치권과 영주의 지배에 대항하여 일어난 북부 이탈리아 도시공동체의 저항으로부터 비롯된다. 당시 사소페라토의 바르톨루스는 도시공동체들이 왕국과 관련하여 갖는 지위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명목적으로는(de jure) 주권이 왕, 즉 신성로마황제에게 있지만, 사실상(de facto) 제반사를 스스로 해결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법과 사실이 충돌한다면 법이 사실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개하였다.<sup>19)</sup>

법조문이 실제 상황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해석이라는 매개가 필요하다. 이 법조문의 해석에는 해당 법조문의 본래적 목적이나 정신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때 해석의 주체는 개인이거나 여러 개인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가 해석을 하든 즉 황제이든 개별 법관이든

---

19) 퀴틴 스킨너(Quentin Skinner),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 2: 종교개혁의 시대』(*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2: The Age of Reformation*), 박동천 역(서울: 한국문화사, 2012), 10.



한 사람의 시민이든, 그 법조문의 정신과 목적에 대한 해석은 ‘정당한 이치’에 맞아야 하는데, 이때 정당한 이치의 근거는 ‘어떤 개인 또는 개인들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판단된 이치, 또는 판단될 수 있는 이치’를 말한다.<sup>20)</sup> 아무리 황제의 명령이라도 이 법조문의 정신과 목적을 해석하는 원칙인 ‘정당한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공동체는 이 정당한 이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바로 이점에서 공동체는 스스로 주권을 가진다고 바르톨루스는 보았다.

이러한 개념은 중세 오컴의 정치 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오컴은 자신의 책 『대화』에서, ‘만일 교황이 명백히 이단이라면’, 총공의회가 ‘교황의 승인과 상관없이 소집’되어 그를 ‘심판하고 폐위시키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이는 교회의 정치구조를 교황을 우두머리로 하는 ‘절대 왕정이 아니라 하나의 입헌군주정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곧 교황에게 주어진 권력은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에게 주어진 것”<sup>22)</sup>이라는 이해를 반영한다. 이런 공의회주의 주장에 영향력을 크게 미친 인물은 장 제르송(Jean Gerson)인데, 그는 교황의 권력은 “통치를 통해 공동선을 추구한다”<sup>23)</sup>는 조건 아래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따라서 교황은 “교회의 공복 또는 공무원이고, 그의 권위는 하나님의 백성의 안녕을 도모하는 목표를 스스로 얼마나 성실히 추구하느냐”<sup>24)</sup>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승계하는 자크 알멩은 『오컴 해설』에서 “세속적이든 교회적이든 모든 주권은 통치자의 이익이 아니라 인민의 이익을 위해 세워진 것”<sup>25)</sup>임을 역설한다. 종교개혁은 중세말기 이러한 정치사상의 흐름을 따라 교황 절대주의를 가식으로 선포하고 반대한 것이다.

---

20) 『위의 책』, 11.

21) 『위의 책』, 109.

22) 『위의 책』, 109.

23) 『위의 책』, 115.

24) 『위의 책』, 116.

25) 『위의 책』, 123.

무엇이 공동체를 위한 공동선인지를 식별해주는 정당한 이치란 공동체 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과 이치들을 고려할 때, 판단의 준거점이 필요하지만 “이를 본체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나 절차는 원래 있을 수 없는 것”<sup>26)</sup>이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덕’ 혹은 ‘비르투’(virtù) 개념인데, 이는 “도시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동일시하고, 자기가 가진 최고의 역량을 도시의 자유와 위대함을 확보하는 데에 바치도록 인도”<sup>27)</sup>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정당한 이치는 비르투를 지닌 개인이나 시민들을 통해 식별되기 마련인데, 이 연장선상에서 ‘국가 이성’(reason of state) 개념이 발원한다.<sup>28)</sup>

본래 도시 공동체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식별해주는 정당한 이치는 그것을 찾아내어 드러낼 역량을 갖춘 개인에게 있고, 따라서 각 개인은 자유롭다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그 정당한 이치를 올바로 식별해 줄 권위의 전거를 개념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가 이성’까지 발전되어 나왔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 이성은 덕성을 지닌 완전한 개인이 소유했을 품성을 추상적으로 가정하여 도출된 추상이다. 따라서 추상적으로 전용될 경우, 국가 이성은 언제든지 레비야단으로 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서 국가 이성 개념의 토대는 ‘덕’이다. 일반 시민의 덕. 군주도 마찬가지로 덕성을 지녀야 한다. 군주의 진정한 역할은 “자기 나름의 상상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법을 시행하는 중”<sup>29)</sup>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만일 군주가 이러한 의무를 온당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통치자에게는 단연코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sup>30)</sup>고 멜랑히톤은 주장했다. 하지만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곧 직접적으로 저항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부도덕한 군주라도 결국 그 권위는 ‘신의 의지와 목적을

26) 『위의 책』, 14.

27) 『위의 책』, 15.

28) 『위의 책』, 16.

29) 『위의 책』, 165.

30) 『위의 책』, 168.

반영<sup>31)</sup>하는 것이라고 루터는 보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이 유럽 정치사에 미친 영향력은 바로 이 군주의 덕성과 연관이 있다. 만일 덕성을 갖추지 못한 부도덕한 군주의 명령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는 곧 부패하고 부도덕한 교황의 명령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로부터 연원하기 때문이다. 고전적인 신학적 답변은 수동적 복종 즉 모든 권력은 신이 정한 것이니, 위에 있는 권력에게 복종하라는 것인데, 종교개혁은 이 수동적 복종 이론에 대항하는 대응이론을 만들어 가면서 근대 정치사상에 크게 기여했다.

중세신학자들의 대응 이론은 훗날 의회민주주의의 기초 모델이 된 ‘공의회주의’였다. 더 나아가 투데스키스와 같은 사람은 정의롭지 못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를 만나면, 일단 항소 절차를 통해 호소를 하고, 그래도 정의롭지 못하면 ‘바로 폭력을 통한 저항이 가능하다’<sup>32)</sup>고 보았다. 물론 이 폭력을 통한 저항은 교황이나 군주와 같은 상급 판사나 판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급 판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논증들은 종교개혁가들에게 저항의 영감을 제공하였다.

루터는 진정한 교회란 ‘콩그레가티오 피델리움(congregatio fidelium), 즉 신의 이름으로 모임 신앙심 깊은 사람들의 집합’<sup>33)</sup> 혹은 공동체로 보았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종교적 신분과 세속적 신분에 의해 차별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인이라는 점에서 바로 ‘사제’이며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는 곧 종교적 신분에 속한 이들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선천적이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가 ‘사법권을 가지고 기독교도의 삶을 지휘하고 규율할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sup>34)</sup> 더 나아가 교회 당국은 세속의 사안들에 대한 어떠한 관할권도 없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한 정치적 권력은 언제나 세속적인

---

31) 『위의 책』, 163.

32) 『위의 책』, 21.

33) 『위의 책』, 45.

34) 『위의 책』, 54.

것이다. 여기서 루터의 주장은 세속 정부의 권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던 교황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세속의 권력을 이렇게 인정하는 한편으로 루터는 세속 군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네처럼 사악하고 추잡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몰아가려 한다면 그런 형편 없는 통치자에게는 어떤 존경이나 복종도 합당치 않다”<sup>35)</sup>고 주장한다.

“만약 통치자가 스스로 신의 대리인임을 표시하는 가면을 찢어 버리고 신민들로 하여금 사악하거나 신앙심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한다면, 그에게는 복종하면 안 된다. 신민은 설사 군주에 대한 불복종이 되더라도 자신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sup>36)</sup>

하지만 루터는 이를 통해 저항 개념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부당한 권력에 ‘불복종’하는 것은 그에 맞서 직접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루터가 농민전쟁을 극구 반대하던 이유이다.

종교개혁기 저항권 개념은 위그노 전쟁 중 칼뱅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우선 ‘수동적 저항’ 혹은 ‘불복종’ 개념이 제안되었다.<sup>37)</sup> 이는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직접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집행을 무한정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직책에서 사임하는 방식으로 복종하지 않을 길”<sup>38)</sup>을 모색하는 저항을 가리킨다. 또한 일정한 권한을 맡은 책임자가 자신이 책임을 맡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동적 저항으로서 불복종 개념을 주장한 루터의 입장은 곧 급진파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게 된다.

근대국가의 절대군주정은 루터의 정치이론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래서 “루터가 없었더라면 루이 14세도 있을 수 없었다”<sup>39)</sup>는 휘기스의 말은

---

35) 『위의 책』, 62-63.

36) 『위의 책』, 63.

37) 『위의 책』, 23.

38) 『위의 책』, 24.

39) 『위의 책』, 241.

과연이 아니다. 루터가 근대왕정체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왕정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교황권에 대항하는 권력을 모으는 것이 당시 정치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터는 교황권(교회)과 세속권력의 분립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모든 정치적 권위는 인민의 집합에서 비롯되며,”<sup>40)</sup> 따라서 모든 통치자는 신민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개념도 발전시켜 주었다. 따라서 군주는 공동체를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주권자가 아니라 오히려 ‘대행자(minister) 또는 관리자(rector)’<sup>41)</sup>의 위상을 갖는다. 다시 말해 군주는 공동체를 소유하거나, 공동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권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위임 받은 자(trustee)로서 의무’<sup>42)</sup>를 가질 뿐이다.

자크 알맹을 위시한 소위 ‘소르본 학파’는 이 연장선 상에서 인민은 “자신들의 궁극적 권력을 통치자에게 위임할 수는 있지만 결코 양도할 수는 없으며, 그러므로 통치자의 위상 역시 결코 절대적 주권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대행자 또는 관리자의 위상만을 가질 수 있다”<sup>43)</sup>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인민 전체가 왕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인민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권위를 군주에게 단지 위임할 뿐”이다.’<sup>44)</sup> 이들의 주장은 “합당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통치자라면 신민들의 손에 의해 폐위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sup>45)</sup>는 불온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핵심은 누가 과연 부당한 통치자에 대항하여 정의의 검을 휘두를 권리를 갖고 있느냐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12세기 말 볼로냐의 아초(Azo of Bologna)와 로테리오 필랑제리(Lotterio Filangieri) 간에 있었던 논쟁인데, 아초는 “정의의 검을 휘두를 권리가 황제에 못지않게 지방의 체후들과 행정관들에게도 있다”<sup>46)</sup>고 주장하였

40) 『위의 책』, 242.

41) 『위의 책』, 248.

42) 『위의 책』, 249.

43) 『위의 책』, 253.

44) 『위의 책』, 255.

45) 『위의 책』, 257.

다. 이는 오컴의 윌리엄이 저술한 『교황의 권력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에서 “만약 제국의 우두머리가 폭군이라면, ‘로마의 임페리움에 복종하는 인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 특히 제국의 몸체에서 주된 ‘지체들’ 또는 ‘구성부분들’에 비견할 수 있는 ‘선제후들’이 그를 제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을 제시했을 때 정당화된 것이기도 하다.<sup>47)</sup> 그래서 철학자 마리오 살라모니오는 1514년 출판된 『로마 귀족의 주권』에서 “모든 합법적인 통치자는 법의 주인이 아니라 법의 하인이어야 하며, 심지어 군주가 공포한 법이 ‘안정과 공동 복리에 이바지’ 하지 않는다고 인민이 나중이라도 알게 된다면, 주권을 보유하는 인민이 그런 법을 ‘정의의 이름으로 폐기하는 일’마저도 가능하다”<sup>48)</sup>고 설득하였다.

칼뱅은 종교개혁 참여 초기 루터의 절대적 무저항이라는 바울 신조 해석에 머물러 있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신의 대리인이며 신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530년을 기점으로 루터와 신학자들이 능동적인 저항 개념을 발전시켜 나아가자, 칼뱅주의자들도 능동적 저항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칼뱅주의자들 중 능동적 저항 개념을 발전시킨 선두는 존 녹스였는데, 그가 품은 핵심적 질문의 하나는 ‘우상숭배를 강제하고 진실한 신앙을 단죄하는 행정관에게 복종을 바쳐야 하는지 여부’<sup>49)</sup>였다. 이 물음에 대해 녹스는 만일 통치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직무를 올바르게 그리고 정당하게 수행하는 한, 인민들은 복종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인민은 더 이상 복종의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녹스의 이 급진적 견해가 대륙의 칼뱅주의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칼뱅 본인은 칼뱅주의자들보다 더 급진적이었다. 그래서 1559년 출판한 『기독교 신앙의 기구』 말미에 ‘왕의 불경건한 칙령에 복종

---

46) 『위의 책』, 268.  
 47) 『위의 책』, 270.  
 48) 『위의 책』, 279.  
 49) 『위의 책』, 371.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왕에게 죄를 범한 것은 아니<sup>50)</sup>라는 다니엘의 예를 제시하는데, 물론 여전히 능동적 저항이라기보다는 불복종의 개념에 더 가까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주의자들은 루터주의자들의 능동적 저항 개념 안에 내포된 논리적 모순을 정면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사상적 공헌을 한다. 즉 만일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것이라면, 그들이 정의롭든 부정의하든 그들에 대한 어떤 형태의 저항도 이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꼴이 된다. 더 나아가 부당한 통치자에 대한 능동적 저항이 신학적으로 정당하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악과 불의를 창조하신 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신성모독을 범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는 길은 모든 권력이나 공직이 신의 서임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루터주의의 본래적인 권력 이해 즉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바울식 권력 해석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뱅주의자들은 여기서 모든 정당한 권력은 하나님이 내린 ‘선택의 결과로 설립’되며, 그 다음으로 ‘거룩한 인민에게서 비준을 받는다’는 해석을 내린다.<sup>51)</sup> 이렇게 수정된 해석을 따르자면 모든 권력과 통치권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지만, 그것의 비준은 ‘인민’에게 있다고 본다면, 부정한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범위도 넓어진다. 루터주의자들의 능동적 저항 개념의 한계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서임된 권력들 즉 ‘하위행정관들’에게 한정된다면, 수정된 칼뱅주의자의 관점에서 저항권은 하급행정관 외에 인민의 대표인 민중의 행정관과 더 나아가 시민 개개인까지도 포함할 가능성이 열려진다.<sup>52)</sup> 이러한 칼뱅주의의 급진적 해석을 고전적 교과서로 집대성한 책이 바로 존 로크의 『시민 정치에 관한 두 편의 논고』이다.<sup>53)</sup>

---

50) 『위의 책』, 425.

51) 『위의 책』, 439.

52) 『위의 책』, 449.

53) 『위의 책』, 457.

존 로크의 저항 개념은 ‘저항권’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급진적 칼뱅주의자들의 견해를 넘어선다. 법이 부여한 권력을 넘어서서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는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데, 로크는 이 저항을 ‘인민의 집합’이 향유하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로서 확립한 것이다.<sup>54)</sup> 이러한 발상은 프랑스의 위그노파에게로 전해져, 특별히 1572년 대학살 이후, ‘저항권’이라는 개념으로 확고하게 확립되어 나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그노파 사상가들은, 행정관들은 자신들을 세워준 인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자신들이 세운 왕에게 지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행정관들은 왕국의 신하이니 결코 왕의 신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sup>55)</sup> 물론 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이 행정관들이라고 본 점에서 현대의 정치 이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직임 즉 인민의 복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당하고 부적당한 통치자에게는 저항해야 할 ‘도덕적 권리가 발생’<sup>56)</sup>한다고 본 점은 결정적으로 새로운 발전이었다.

위그노의 저항권 개념을 인민의 권리, 즉 ‘인민 주권’<sup>57)</sup>으로 확대한 사상은 스코틀랜드의 칼뱅주의자 조지 뷰캐넌이다. 뷰캐넌의 개념에서 획기적인 전환은 바로 저항권이 ‘인민 전체의 집합(universo populo)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 개개인(singulis etiam)에게도’<sup>58)</sup> 있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점이다.

이러한 ‘저항권’ 개념의 발전이 단지 ‘저항’이라는 것을 주제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기 교황권과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세속군주와의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정황을 기억해야 한다. 즉 국가라는 개념이 애초부터 주어진 다음, 이 국가 개념을 분석하고 추론하면서 구성된 것이 ‘인권’이나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애초부터 인권의 토대 혹은

---

54) 『위의 책』, 458.  
 55) 『위의 책』, 615.  
 56) 『위의 책』, 619.  
 57) 『위의 책』, 631.  
 58) 『위의 책』, 633.



근거를 묻는 과정에서 ‘국가’라는 정치 체제의 도덕적 윤리적 신학적 기초가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즉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립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권’은 바로 ‘공동체의 복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인권’의 개념이 개인의 권리로서만 출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개별권리들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공동의 선이고, 이 공동선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가 국가라는 제도장치인 것이다. 그럼 문자, 국가란 무엇인가?

#### 4. 국가의 목적으로서 우주적 공동체의 안녕

국가의 권력, 즉 주권(sovcreignty)이란 공동선의 추구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국가는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의 안녕과 복지를 추구할 때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갖지만, 만일 국가가 그 본연의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이 권력은 통치자에게 ‘위임’되었을 뿐 원칙적으로 ‘양도’된 것은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제도가 국가이지, 국가라는 장치를 지탱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종교개혁은 이 통치권이 교황권에 의해 정당하지 못하게 남용될 때 일어났다. 그리고 이 개혁을 통해 근대의 인권 개념이 확립되었다. 이를 뒤집어 표현하면, 국가라는 개념은 본래부터 인권 개념의 부산물로 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서구 사상의 세계사적 공헌이라 할 수 있는 인권 개념은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연원한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예배 공동체 안에는 남자와 여자도, 어른과 어린이도, 종과 자유인도 없다는 바울적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평등’이라는 인권 개념의 단초가 담겨있다. 자본주의 시대는, 비록 도착적으로 왜곡된 형태이지만, 평등이 가장 제도적으로 잘 실현된 구조와 제도를 갖고 있다. 단서는 ‘돈을 매개로 해서만’ 그러한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돈만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평등하다. 그 돈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평등이 실현된 것이다. 하지만 본래 바울 공동체에서는 돈이나 재산의 소유 여부가 평등의 조건은 결코 아니었다. ‘평등’하다는 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담지한 고유한 인격의 가치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종교개혁 당시 본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던 인권이 소위 면죄부를 명목으로 ‘돈 앞에서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도착적으로 왜곡되는 순간, 루터는 분명히 일어났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본래 치열한 현장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기보다는 텍스트 즉 성서를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지루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텍스트를 읽고 또 읽고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에는 교황도 위계제도로서의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다. 성서의 공동체는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인정받는 공동체였던 것이다. 종교개혁은 바로 평등한 개인들이 ‘돈으로’ 차별받는 세상에서, 돈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다시금 초대교회의 정신을 따라 인권을 부여하는 선언이었던 것이다. 모든 정치적 권위는 전체로서의 인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통치자는 공동체의 인권 즉 공동체의 안녕과 복지가 평등하게 운행되도록 자신의 직무를 다할 때, 그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지, 결코 무조건적으로 그 권력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대의 인권 개념이 한 개인의 권리로 상정된 것은 곧 인권의 기초 단위가 개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개인의 인권 사이의 양적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과 개인의 인권은 동등하다는 인식의 발로였던 것이다. 따라서 근대 개인주의는 본래부터 개인의 권리가 그 어떤 권리보다 앞선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국가 권력만큼이나 개인의 인권이 동등하게 혹은 근원적으로는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개념적 도구였던 셈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근대의 개인주의(individualism)가 지구 문명을 위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세계를 표상하는 근거는 ‘구체적인 사실’이

지만, 그 구체적 사실을 언어라는 추상적 장치의 도움없이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의 추상적 개념들이 우리가 삶을 근거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들(concrete facts)인 것은 아니다. 철학의 오류는 추상을 구체적인 사실로 오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the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이다. 우리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우주와 세계를 파악해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실들은 직접적인 인식의 대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철학은 언어적 추상 개념을 고안하여 그것이 처한 시대적 상황조건 하에서 개념적으로 그 구체성들을 제시할 따름이다. 한 시대에 적실성을 갖는 개념적 체계들도 시대적 상황과 역사가 바뀌면 적실성을 상실한다. 그래서 철학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늘 그 개념체계를 수정하고 변혁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가 처한 지구적 위기들은 결코 개체 인간의 인권 개념으로부터 확장된 국가 주권 개념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윤리적 주권 개념으로부터 우리 시대 인권 개념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즉 주권은 피통치자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의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며, 따라서 그렇게 정당화된 국가 주권은 그에 귀속된 피통치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제 인간이라는 권리 아래 귀속된 존재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자신의 인권을 사용할 때, 인권은 정당성을 획득한다. 그렇다면 인간에 귀속된 존재들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권력도 인간의 권리도 결국 자신에게 맡겨진 혹은 위임된 존재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통치권을 민중을 통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위임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위임된 통치권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저항권을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루터의 종교개혁은 보여주고 있다.

2014년 4월 16일이 지나가지 않고 우리의 기억을 붙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진지하게 묻는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정당한 자신의 직무를 정의롭게 감당하지 못할 때, 신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